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2025년 10월 16일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 영 철

나. 제안이유

- 중기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24.11)」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경북도)가 조성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참여하여 도내 벤처·스타트업 지원
-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26회계연도(본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출자개요

가) 대상기관

기관명	한국벤처투자(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설립일	20. 3. 31.
설립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3~5층
설립목적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 모태펀드, 해외VC 글로벌펀드, 지역혁신펀드 등 운용

나) 출자에정액 : 15억원

- '25년 4.5억원(30%), '26년 6억원(40%), '27년 4.5억원(30%)

다) 출자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2) 투자조합 개요

가) 조 합 명 :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경북 모펀드)

나) 운 용 사 : 한국벤처투자(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다) 출 자 자 : 모태펀드, 포스코, 농협, 경북도, 구미·포항·경산·경주

라) 결 성 액 : 1,011억원(시비 15억원)

구 분	출자자	출자금(억원)	비고	
경북 모펀드	모태펀드	600		
	포스코홀딩스	250		
	농협	30		
	한국벤처투자	11		
	경북도	60		
	기초지자체 (60)	구미시	15	
		포항시	15	
		경산시	15	
		경주시	15	
합계		1,011		

* 최종 결성시점, 총 결성액 및 출자자 변경될 수 있음

마) 존속기간 : 2025년 ~ 2037년(12년)

바) 투자대상 : 경북 도내 스타트업 및 혁신 벤처기업(12대
국가전략기술*)

※ 12대 국가전략기술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모빌리티 ④차세대원자력 ⑤첨단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첨단로봇 ⑪차세대통신 ⑫양자

사)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지방시대 벤처펀드」 선정 ('25. 2. 27.)
- 모펀드 조합 결성 및 1회 출자금 납입 ('25. 10.)
-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한국벤처투자) ('25. 12.)

아) 기대효과

-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 목적 달성

3) 출자 필요성

- 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규아이템 발굴 및 지역 혁신 벤처기업 발굴
- 다)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 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0조, 제71조제4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출자안은

- 중기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24.11.)」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경북도)가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경북 도내 스타트업 및 12대 국가전략 기술 적용 혁신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조성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현재 우리 시 펀드는 총 5개로 집행기관에서는 운용의 효율성, 투자 목적과 회수·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락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